

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08. 10. 16(목)

# 조례안 검토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  
[전문위원 서종진]

<의안번호 제2008 - 41호>

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## I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2일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(경제과장)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## II. 제안이유

- 국내·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

## III. 주요내용

- 가. 국내·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
  - “기반시설”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제16호 신설)
  - 기반시설 지원근거 마련(안 제21조의2 신설)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번호 변경
- 다. 인용하는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
- 라.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
- 마.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순화

## IV. 검토의견

### 가. 이 개정조례안은

-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국내·외 투자사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용어를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

- 안 제21조의2(기반시설 사업지원 등)조에서 “군내 입주 하는 국내·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지원”하는 내용의 신설조항으로, 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」를 2000. 11. 15.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 해 오고 있으나,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투자 사업이나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급변하는 기업 투자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나머지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(안 제3조제4항, 안 제4조)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용어를 맞게 정비하고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

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 V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법규

- (1)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, 제3조, 제9조,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8조,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
- (2)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5호
- (3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 및 「건축법」 제22조
- (4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
- (5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5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(6)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
- (7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- (8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, 제17조 및 「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

나. 예산조치 : 투자유치 기반시설 사업비(09년 20억원)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8. 7. 9 ~ 7. 29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# 관련법 발취

##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2.12.30, 2005.3.31, 2006.1.11, 2007.1.19, 2008.3.21, 2008.3.28>

6. "기반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
나. 광장·공원·녹지 등 공간시설

다.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 등 유통·공급시설

라. 학교·운동장·공공청사·문화시설·체육시설 등 공공·문화체육시설

마. 하천·유수지·방화설비 등 방재시설

바. 화장장·공동묘지·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

사.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##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19조 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·군·구별 인구과밀·산업입지·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·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

제16조 (기업의 지방이전)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>

1. 인구밀도

2. 광업·제조업의 출하액

3. 그 밖에 광업·제조업사업체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,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

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,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### 「중소기업 기본법」

제3조 (정부 등의 책무)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)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※ 중소기업의 범위 :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

###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26조 (기업의 지방이전촉진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###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

제40조 (육성계획의 수립)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(이하 "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1997.12.13, 2002.1.26>

②시·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1997.12.13>

1.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,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산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

2.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
3.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과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
5.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
6.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
7.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·도별로 요청하는 사항
8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<의안번호 제2008 - 42호>

#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I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2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농업기술센터소장)
- 다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## II. 제안이유

- 광역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의 시행 등 각종 사업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III. 주요내용

- 가. 당초 12조의 내용을 5장 32조로 전면 개정함
- 나.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
  -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 -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, 지원대상, 절차,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  - 농업환경개선 시책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다.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)



-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, 위원임기, 위원장 직무, 위원해촉, 회의, 간사 및 회의록, 심의사항 처리,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, 수당에 관한 사항
- 라.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)
- 사업단의 구성과 기능, 광역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마.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)

#### IV. 검토의견

##### 가. 이 개정조례안은

-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증산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,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,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, 2008년 농림사업시행 지침(농림부)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의 시행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친환경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,

- 안 제2장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으로,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수립, 지원사업의 범위, 지원대상,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, 안 제3장에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·운영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조항을 신설(안 제23조)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- 또한, 안 제4장에서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사업(안 제27조), 사업단장의 직무(안 제28조), 사업단 운영(안 제29조)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신설하였으며, 안 제5장에서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과 홍보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(안 제30조부터 제31조), 개정안 내용이 친환경농업육성법과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 V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3조,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(2) 입법예고(2008. 8. 20. ~ 9. 9.) 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사항 없음

# 관 계 법 령

## □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

第3條 (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) ①國家는 親環境農業에 관한 基本計劃과 정책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 등의 自發的 참여를 촉진하는 등 親環境農業을 振興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26>

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親環境農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26>

第7條 (親環境農業 實踐計劃<개정 2001.1.26>) ①市·道知事は 育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·道 實踐計劃을 수립·施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26>

②市·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·道 實踐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市長·郡守·自治區의 區廳長(이하 "市長·郡守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市長·郡守는 市·道 實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·郡 實踐計劃을 수립하여 市·道知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26>

제17조 (친환경농산물의 인증)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. <개정 2006.9.27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(이하 "인증품" 이라 한다)의 포장·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(이하 "친환경농산물표시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.